

PCT 국제출원절차 (2)

특허청(출원과)

목 차

- I. PCT 국제출원제도의 개요
- II. PCT 국제출원절차
- III. PCT 국제출원 수수료 등
- IV. PCT 국제출원서류의 작성요령 등
- V. PCT 계약국별 국내단계 개시요령
- VI.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일람표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III.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1.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는 출원시 납부하는 송달료, 기본료, 지정료, 조사료외에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료와 취급수수료가 추가된다.

또한 출원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확인료, 가산료, 우선권서류송달신청료 등이 있으며 이들 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출원 수수료(96. 6 현재)

종 류	금 액	납 부 시 기	납 부 처
송 달 료	40,000원	국제출원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리관청 (특허청)
국 제 료	기본료 544,000원 (출원서 30매까지) 10,700원 (30매초과시 1매당)		
	지정료 132,000원(1개국당) (11개국을 초과하는 지정에 대하여는 무료임)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년 또는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1개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조 사 료	• 오스트리아: 177,000원 • 일 본: 622,000원 • 호 주: 471,000원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종 류	금 액	납 부 시 기	납 부 처
확 인 료	지정료 합계금액의 50%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수리관청 (특허청)
가 산 료	납부하지 아니한 국제출원 수수료 금액의 50% (단, 송달료 이상 기본료 이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선권서류 송달신청료	우선권서류 1건당 10,000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③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예비심사기관	금 액	납 부 시 기	납 부 처
오스트리아 특허청	예비심사료 2,200 ATS 취급수수료 2,060 ATS	국제예비심사청구서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	오스트리아 특허청
일본특허청	예비심사료 28,000 JPY 취급수수료 20,600 JPY		일본특허청

※ 국제예비심사기관별 수수료 송금 은행계좌

예비심사기관	수수료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예비심사기관 주소
오스트리아 특허청	예비심사료 취급수수료	송금은행: Österreichische Postsparkasse 계좌명: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kohimarkt 8-10, Postfa- ch 95, A-1014, Vienna Austria
일본특허청	예비심사료	송금은행: The Bank of Tokyo Uchisaiwai-cho Branch 계좌명: JP/KR-WIPO 계좌번호: 807192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umigasaki 3-chome Chiyoda-ku, Tokyo, Japan
	취급심사료	송금은행: The Bank of Tokyo Uchisaiwai-cho Branch 계좌명: WIPO-PCT, Geneva 계좌번호: 473286	

2. PCT 국제출원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 국제출원 수수료와 출원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인료, 가산료, 우선권서류 송달신청료 등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필요한 예비심사료 및 취급수수료는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 계좌에 해당통화로 송금하고 그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예: out going cable)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송부한다.

IV. 출원서(REQUEST) 작성요령

1. 출원서(REQUEST) 작성요령

① 일반적 사항

- a)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온도는 섭씨온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b) 용어 및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 서류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 c) 출원서에는 특허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원서 각 난의 기재요령

- a) "Applicant's of agent's file reference" 난의 기재요령
이 난에는 문자,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참조 기호를 12자의 범위 내로 기재할 수 있다.
- b) "Box No. I TITLE OF INVENTION" 난의 기재요령
이 난에는 발명의 명칭을 짧고 명확(영어인 경우 2단어에서 7단어 이내에가 바람직함)하게 기재하되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c) "Box No. II APPLICANT" 난의 기재요령
이 난에는 출원인을 기재하되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야 한다.
- "Name and Address" 난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하며 주소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가지만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 이 난에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이기도 한 경우는 “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에 V표시를 한다.
 - “Telephone No., Facsimile No. 및 Teleprinter No.”란에는 전화, 팩스 및 텔렉스번호를 기재하되 국가코드 및 지역 코드를 포함시켜야 한다.
 - “State(i.e. country) of nationality”란에는 출원인의 국적을 기재하되 “WIPO Standards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mex A에 따른 그 문자코드로 기재한다.
 - “State(i.e. country) of residence”란에는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기재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존재하는 국가의 국명을 기재한다.
 -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란에는 상기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 인지를 해당하는 □에 V하여 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해야 한다. 이 난의 첫번째 또는 세번째 □에 V표하여 미국에 대한 출원인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상기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어야 한다. 네번째 □에 V표한 경우에는 Supplemental Box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기재하여야 한다.
- d)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FURTHER INVENTORS”난의 기재요령
이 난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기재하되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이 난의 오른쪽 “This person is”난에
- 는 기재된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에 V표하여야 한다.
 - 그 외는(c)의 기재요령과 같다.
- e) “Supplemental Box”난의 기재요령
이 난은 기재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해당 난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며 각 용지에는 원칙적으로 말소, 정정, 덧쓰기 및 행간 삽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f) “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난의 기재요령
이 난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먼저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에 V표하여 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 이 경우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진다.
 -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위에 기재해야 한다.
 - 대리인과 대표자 중 어느 쪽도 선임하지 않았으나 특정의 주소로 통지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재하고 마지막 □에 V표하여야 한다.
- g) “Box No. V DESIGNATION OF STATES”난의 기재요령
이 난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특정 체약국에 대하여 국내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국명 앞의 □에 V표를 한다.
 - 유럽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EP앞

의 □에 V표를 하고, 유럽특허기구 (EPO) 회원국 중 일부만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를 삭제하고 EP를 지정할 수 있다. EPO 회원국을 EP로도 지정하고 국내특허로도 지정한 경우에는 양자에 대하여 모두 지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 아프리카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OA앞의 □에 V표를 하여야 하며 아프리카지적소유권기구(OAPI) 회원국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는 없다. 또한 OAPI 회원국은 OA특허로만 지정할 수 있고 국내특허로는 지정할 수 없다.

- 아프리카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AP앞의 □에 V표를 하여야 하며 아프리카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중 일부만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를 삭제하고 EP를 지정할 수 있다.

ARIPO회원국을 AP로도 지정하고 국내특허로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자에 대하여 모두 지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 조약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타 종류의 보호 또는 취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타 종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 종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계약국의 국명뒤 점선 위에 “petty patent”[소특허(호주의 경우에만 해당됨)] “provisional patent”[가특허(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지츠스탄, 우즈베키스탄에만 해당됨)] “utility model”[실용신안(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케냐, 타지키스탄, 오스트리아, 조르지아, 몰도바, 헝가리, 일본, 카자흐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키르지츠스탄, OAPI의 경우에만 해당됨)], “utility certificate”[실용증(트리니다드앤드토바고의 경우에만 해당됨)], “inventor’s certificate”[발명자증(북한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기재하고, 특허에 더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만 해당됨)에는 그 국명 뒤에 “and utility model”이라 기재한다.

- 타 종류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 종류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국의 국명 뒤에 “patent of addition”[추가특허(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말라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조르지아, 스페인의 경우에만 해당됨)], “Certificate of addition”[추가발명자증(룩셈부르크, OAPI의 경우에만 해당됨)],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계속 또는 일부계속(미국의 경우에만 해당)]등을 기재한다.
- 양식에 없는 PCT 계약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양식 시행후 PCT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 등)에는 그 국명을 기재한다. 기재한 국가에 대하여 지역 특허 또는 조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종류의 보호 또는 취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명 다음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 "Box. No. V"의 최하단에는 출원인의 안전을 위하여 위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지정국 이외의 모든 PCT 계약국을 예비지정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출원인이 예비지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XX로 삭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국제출원 후에 지정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예비지정에 의한 지정확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지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출원인에 의한 지정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비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h) "Box. No. VI PRIORITY CLAIM"년의 기재요령

이 년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 국명, 출원일 및 출원번호를 해당년에 기재하고 선출원이 지역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이 제출된 관청명을 표시해야 한다.
-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16월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날짜는 서기 및 그레고리력에 의한 일·월·명칭·년을 기재한 후 괄호안에 일·월·년의 최후 2개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

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를 붙인다.

예: 04 September 1993(04, 09, 93)

타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 및 그레고리오력에 의한 일자를 병기한다.

i) "Box No. VII EARLIER SEARCH"년의 기재요령

이 년에는 국제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선조사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선 조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조사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다.

j) "Box No. VIII CHECK LIST"년의 기재요령

이 년에는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에 V표를 한다.

k) "Box No. IX SIGNATURE OF APPLICANT OR AGENT"년의 기재요령

이 년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타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날인 한다.

2. 명세서(DESCRIPTION) 작성요령

① 명세서 작성의 일반적 요령

a) 작성원칙

명세서 작성의 기본원칙은 그 발명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료하고 완전하게 발명의 내용을 설

명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원칙은 PCT 규칙5에 규정되어 있다.

어떻게 하여야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느냐에 관한 상세한 요건은 각국 특허청의 관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국가의 국내특허청의 관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국내 단계에서 명세서를 보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최선의 실시예”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만약 하나의 지정관청이라도 “최선의 실시예”의 적시를 요구한다면(예: 미국특허청) 그 최선의 실시예는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한 명세서는 모든 지정관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국내출원서를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사실이나 PCT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다수국에 출원할 경우처럼 다수의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적은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b) 작성순서

명세서에는 제일 먼저 출원서의 Box No. I년에 기재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다음의 6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기술하여야 한다.

- 기술분야(Technical Field)
- 배경기술(Background Art)
- 발명의 상세한 설명(Disclosure of Invention)

-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 최선의 실시예(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또는 실시예(Modes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②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의 요건

a) 의의

국제출원은 청구범위가 오직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발명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에만 관련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 원칙은 PCT 규칙13에 규정되어 있다.

발명의 단일성은 각 청구범위의 특징부들 사이에 “기술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이때 특징부들이라 함은 각각의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볼때 선행기술을 능가하는데 명백히 공헌하는 기술적 특징들을 말한다. 일군의 발명들이 단일의 발명개념을 형성할 정도로 관련되어 있느냐의 판단은 그 발명이 별도의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느냐 또는 단일의 청구항 속에 대체적으로(alternatively) 기재되어 있느냐에 관계없이 판단한다. PCT 시행세칙의 부록B는 국제출원이 PCT 규칙 13에 규정하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판단하는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다.

b) 발명의 단일성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이 요건의 충족여부는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체크

되며 이들 관청에 대한 중요한 절차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에 대한 국내단계의 절차에 관련될 수 있다.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국제출원은 모든 지정관청과 선택관청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

즉, 어떠한 국내법도 PCT에 규정된 것과 다르거나 또는 PCT에 규정된 것에 부가하여 새로운 요건을 정할 수 없다.

명백하게 상이한 발명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와 심사가 필요하므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2이상의 발명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뉴클레오티드 및/또는 아미노산 배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에는 WIPO Standards ST.23 (Recommend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 in Patent Applications and in Published Patent Documents)에 따라 작성한 배열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WIPO Handbook on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Documents에 나와 있다. 타자 또는 인쇄될 목록은 WIPO Standards ST.22(Recommend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Patent Applications Typed in OCR Format)에 따르는 것이 좋다.

3. 청구범위(CLAIMS) 작성요령

① 청구범위의 작성방법

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PCT 규칙6은 청구범위의 항수 및 항번호의 부여방법, 국제출원의 다른부분을 인용하는 방법,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및 종속청구항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범위의 기재는 선행기술 부분과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② 종속청구항이 기재방법

원칙적으로 2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청구항(다수 종속청구항)은 인용하고자 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해야 한다. 또한 다수 종속청구항은 다른 종속청구항에 의하여 인용될 수 없다. <계속> 발특9610

